

2021년도 제5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21년도 제5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2일

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시험일시

○ 2021. 11. 20.(토) 10:00 ~ 10:40 (40분) / 11:00 (60분)

※ 시험장 출입은 08:00부터 가능하며 09:10까지 입실

- 8·9급(간호, 환경, 보건, 의료기술) : 10:00 ~ 10:40 (40분)
- 농촌지도사, 수의7급 : 10:00 ~ 11:00 (60분)

2 시험장소

○ 아래 표에서 본인의 응시직렬(직류)로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(이외의 장소에서는 시험응시 불가)
임용예정기관에 따라 시험장소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
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시험장		직렬(직류) : 임용예정기관	비고
학교명	주소		
울전중학교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59(울전동)	•보건9급(보건) : 용인, 안양, 시흥, 군포, 이천, 여주 •의료기술9급(임상병리) : 이천 •의료기술9급(치과위생) : 평택	주차 불가
덕영고등학교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74번길 15(고림동)	•간호8급(간호) : 용인 •환경9급(수질) : 안산, 평택, 광주, 의왕 •환경9급(대기) : 광주 •환경9급(폐기물) : 평택	

시험장		직렬(직류) : 임용예정기관	비고
학교명	주소		
우성고등학교	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37(고천동)	•수익7급(수익) •간호8급(간호) : 수원, 시흥, 이천, 의왕	주 차 불 가
백신중학교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89(마두동)	•농촌지도사(농업) •환경8급(수질) •환경9급(수질) : 김포, 양주 •환경9급(대기) : 의정부 •환경9급(폐기물) : 김포, 의정부	
풍무중학교	경기도 김포시 유현로33번길 60(풍무동)	•보건9급(보건) : 김포, 양주, 가평, 연천 •의료기술9급(임상병리) : 고양 •의료기술9급(물리치료) : 고양, 김포 •의료기술9급(치과위생) : 고양, 김포, 구리 •의료기술9급(작업치료) : 고양, 김포	
금오중학교 <의정부시 소재>	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80(금오동)	•간호8급(간호) : 구리, 동두천, 가평	

3 응시자 유의사항

[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]

- **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**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장 입실 시 **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.5m 이상 유지**하시기 바랍니다.
- **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,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, 분실 또는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.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에 따라 **환자, 의사환자,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 통지서)를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.**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수험생임을 알리고 아래의 신청기한 내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,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시험장소 및 방법 별도 통보)

— <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 안내> —

- 1) 신청기한 : **2021. 11. 19.(금) 18:00까지**
- 2) 제출서류
 - 확진자 : 응시 신청서[붙임2],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
 - 자가격리자 : 응시 신청서[붙임3], 외출허가 증빙서류
- 3) 신청방법: **전화 신청(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, ☎ 031-8008-4046) 후**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이메일(ggexam@korea.kr) 송부
 - ※ 시험장 준비, 시험문제 수송 등의 관계로 기한 내 사전신청 하지 않은 경우 응시 불가
 - ※ 타 시·도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“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[붙임4]”에 따라 **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.
-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퇴실 시 인원 분산을 위해 시험실별 퇴실 가능 시간을 별도로 고지하고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 예정이오니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기 증상 등을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하며,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으실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일반사항]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09:1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(시험당일 08:00부터 입실 가능)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**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 - 응시표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 - 신분증 : **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**
 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**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**입니다.
 -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**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**(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
 - 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
-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)
-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**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**
-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**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 [2021. 11. 20.(토) 09:00 ~ 11. 23.(화) 18:00), 기간 중 24시간 등록 가능]**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에 접속하여 **가산점 정보를 등록**하여야 합니다.
- **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**
(09: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통제)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**재입실이 불가**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-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 소리, 반복적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(시설 전체) 내에서는 흡연을 할

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- **시험시간 중에는**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(안경 등), 스마트시계, 무선호출기, MP3, 이어폰 등 일체의 **통신기기**와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의 **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**,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**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-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**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**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계산·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 시계 등),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
-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*이번 시험 문제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응시자는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**
(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)
 - ※ 출제된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(안경 등)로 촬영하거나 문제책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-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○, ⊙, ①, ②, ③, ④, ⑤
- 빨간색 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

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(표기)하여야 합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
-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 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해야 하며, **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- 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**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에는 성명, 책형, 생년월일 등 필수기재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시험감독관 서명이 있어야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으며, 이전 답안지는 시험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**
-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■ ■ ■ ■ 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1항)

- 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2항)

- 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.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-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**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**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

▶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1. 12. 9.(목) 전·후에 경기도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>)에 게시합니다.

5

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 안내

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, **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[2021. 11. 20.(토) 09:00 ~ 11. 23.(화) 18:00, 기간 중 24시간 등록 가능]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**

- ※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가산자격증 등록
- ※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☎ 044-202-3255)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1. 11. 19.)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~마' 참고
의사상자 등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
자격증 소지자 ※ 농촌지도사만 해당	과목별 만점의 3%~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

나. 취업지원대상자 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(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.직급별.직류별)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확인

다. 의사상자 등 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(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3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(2)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)로 선발 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- ※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☎ 044-202-3255)에서 확인
- (3)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‘나’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.

라. 자격증 소지자 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	지도사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
가산비율	5%	3%

※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[붙임1] ‘가산 자격증 안내’ 참조

- 해당분야 자격·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(직류)은 직렬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※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농촌지도사만 해당

마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(1)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**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**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

시험명	등록기간(기간 중 24시간 등록가능)
제5회 경력경쟁임용시험 (지도사, 7·8·9급)	2021. 11. 20.(토) 09:00 ~ 11. 23.(화) 18:00

○ 가산점 등록대상 및 입력사항

등록대상	등록사항
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 등	취업지원대상자(의사상자 등) 여부, 보훈(증서)번호, 가점비율
자격증 소지자	자격증 종류, 자격번호

※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(2)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.